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건본주택 운영안내
 - 입장 시 건본주택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 절차 및 위생 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건본주택 입장 제한사항 안내	①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는 경우 ②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건본주택 내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③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 건본주택 입장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지침 위반시 건본주택 퇴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 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상담전화(☎1811-5678)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 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22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상향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2.)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2022.06.22이전부터 계속 거주)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자격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전국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호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7월 03일(월)	07월 04일(화)	07월 10일(월)	07월 24일(월) ~ 07월 2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159-2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시 무이자 조건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개인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세대 기준으로 전용 84㎡B타입 및 122㎡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시(30일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38666호(2023.06.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8층, 17개동 총425세대, 일반분양 425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3000078	1	076.1233	76	76.1233	22.0728	98.1961	6.2109	60.4136	164.8206	61.7730	12	12	1
		2	084.9528A	84A	84.9528	23.9621	108.9149	6.9313	67.4209	183.2672	68.9380	247	247	30
		3	084.9988B	84B	84.9988	24.0293	109.0281	6.9351	67.4574	183.4206	68.9753	110	110	12
		4	122.3139	122	122.3139	33.9544	156.2683	9.9796	97.0717	263.3197	99.2560	56	56	1
합계											425	425	44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지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²×0.3025 또는 m²÷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 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팸플릿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견본주택 ☎ 1811-5678)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6,7,8층	9	422,014,500	437,485,500	0	859,500,000	10,000,000	7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257,850,000	
		105동 1호 106동 1호 108동 1호	1,2층	15	384,453,000	398,547,000	0	783,000,000	10,000,000	6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234,900,000	
		109동 1호 110동 1호 113동 1호	3,4,5층	24	404,682,200	419,517,800	0	824,200,000	10,000,000	72,420,000	82,420,000	82,420,000	82,420,000	82,420,000	82,420,000	82,420,000	247,260,000	
		114동 1호 116동 1호	6,7,8층	24	413,569,300	428,730,700	0	842,300,000	10,000,000	7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252,690,000	
122	56	103동 4호 104동 2호 105동 4,5호	1,2층	2	570,051,000	537,226,364	53,722,636	1,161,000,000	10,000,000	106,100,000	116,100,000	116,100,000	116,100,000	116,100,000	116,100,000	116,100,000	348,300,000	
			3,4,5층	12	640,214,900	603,350,091	60,335,009	1,303,900,000	10,000,000	120,390,000	130,390,000	130,390,000	130,390,000	130,390,000	130,390,000	130,390,000	391,170,000	
			6,7,8층	12	659,413,000	621,442,727	62,144,273	1,343,000,000	10,000,000	12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402,900,000	
		113동 4호 115동 4호	3,4,5층	6	637,367,100	600,666,273	60,066,627	1,298,100,000	10,000,000	11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389,430,000
			6,7,8층	6	644,977,600	607,838,545	60,783,855	1,313,600,000	10,000,000	121,360,000	131,360,000	131,360,000	131,360,000	131,360,000	131,360,000	131,360,000	131,360,000	394,080,000
		107동 4호 109동 4호 111동 4호	3,4,5층	9	637,367,100	600,666,273	60,066,627	1,298,100,000	10,000,000	11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129,810,000	389,430,000
			6,7,8층	9	643,701,000	606,635,455	60,663,545	1,311,000,000	10,000,000	121,10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393,30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약식표기

(단위 : m²)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6.1233	084.9528A	084.9988B	122.3139
약식표기 주택형	76	84A	84B	122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m²)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형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포함)을 득하고 입주할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10%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되, 이 경우의 구체적인 납부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지연이자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위탁자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미신청자 및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지연이자 부과됨)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 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지연이자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본 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주택은 22.05.30 사업승인완료 주택으로 22.08.04 시행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와 무관하며 기존 적용 방식인 실험실(LH,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측정해 바닥 구조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바닥구조 인정제도' 등급 기준을 적용함.
- 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순위 요건

신청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주택형별 청약순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6.22)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미만 거주자 																				
		전용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1항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1항 별표 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3.07.03.(월)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7.04.(화)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또는 ⑤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p>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분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분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분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분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분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분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분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분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분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p>① 무주택기간</p>	<p>32</p>	<p>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p>	<p>0</p>	<p>8년 이상 ~ 9년 미만</p>	<p>18</p>	<p>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p>
		<p>1년 미만</p>	<p>2</p>	<p>9년 이상 ~ 10년 미만</p>	<p>20</p>	
		<p>1년 이상 ~ 2년 미만</p>	<p>4</p>	<p>10년 이상 ~ 11년 미만</p>	<p>22</p>	
		<p>2년 이상 ~ 3년 미만</p>	<p>6</p>	<p>11년 이상 ~ 12년 미만</p>	<p>24</p>	
		<p>3년 이상 ~ 4년 미만</p>	<p>8</p>	<p>12년 이상 ~ 13년 미만</p>	<p>26</p>	
		<p>4년 이상 ~ 5년 미만</p>	<p>10</p>	<p>13년 이상 ~ 14년 미만</p>	<p>28</p>	
		<p>5년 이상 ~ 6년 미만</p>	<p>12</p>	<p>14년 이상 ~ 15년 미만</p>	<p>30</p>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안내(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 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사업주체 건물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건분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가점제, 예비입주 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 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최근1년내 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여부확인 기록 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함.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3.07.10.(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07.24(월) ~ 2023.07.26(수)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건본주택 (장소 : 제주시 도두이동 159-2번지)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시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은 향후 사업주체에서 개별 통보 예정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7.10.(월) ~ 2023.07.19.(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7.1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p>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 제출자는 제외)
	○		전자수입인지	-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	• 분양사무소 비치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 불가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 계약위임용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위임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음.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해 주시길 바람.
- 공급계약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함.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길 바람.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 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공급계약 기간 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함.
- 청약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입계좌	신한은행	100-036-156290	신한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403호 홍길동 → 10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각 회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 됨.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및 추가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기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 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

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으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전까지 별도 안내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5년 02월 예정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을 각각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체 안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금액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6	23,400,000	2,340,000		21,060,000	
84A	25,400,000	2,540,000		22,860,000	
84B	25,400,000	2,540,000		22,860,000	
122	36,100,000	3,610,000		32,490,000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마감재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파우더장 및 드레스룸가구(형별 상이), 현관창고 및 팬트리 내 선반(형별 상이), 특화조명기구 비용이 포함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입계좌	신한은행	100-036-564519	신한자산신탁(주) 이승수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종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개별 시공 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풍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한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유상 옵션 선택품목 안내(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평면 특화 옵션(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옵션형(유상)		타입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알파룸	2짜 슬라이딩도어	고급벽체마감 미선택 시	122	1,260,000	126,000	1,134,000	
침실 1,2	Room in Room	고급벽체마감 선택 시	76	4,000,000	400,000	3,600,000	

	복도 장식장 슬라이딩도어		84A	4,000,000	400,000	3,600,000	
			84B	4,000,000	400,000	3,600,000	
		고급벽체마감 미선택 시	76	4,800,000	480,000	4,320,000	
			84A	4,900,000	490,000	4,410,000	
			84B	4,900,000	490,000	4,410,000	

2) 마감 옵션(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옵션형(유상)	타입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아트월, 벽체 도어, 도어레버 (고급벽체마감)	고급 LPM판넬 히든도어 고급형 도어레버 (거실, 주방, 복도벽, 침실도어)	76	6,800,000	680,000	6,120,000	
		84A	7,250,000	725,000	6,525,000	
		84B	7,250,000	725,000	6,525,000	
		122	7,450,000	745,000	6,705,000	
거실, 주방, 알파룸 (바닥마감)	포세린 타일 마감 (600x1200)	76	1,500,000	150,000	1,350,000	
		84A	1,800,000	180,000	1,620,000	
		84B	1,800,000	180,000	1,620,000	
		122	2,500,000	250,000	2,250,000	
세대바닥전체 (바닥마감)	광폭 강마루 (140x1200)	76	340,000	34,000	306,000	
		84A	390,000	39,000	351,000	
		84B	390,000	39,000	351,000	
		122	540,000	54,000	486,000	
주방 마감 (벽, 상판, 가구)	세라믹 판넬 주방 / 아일랜드 세라믹상판 터치수전, 대형 유럽산 수입 싱크볼(REGINOX) 아일랜드 멀티형콘센트(무선충전기능) 고급 인출식 서랍장(122타입)	76	7,100,000	710,000	6,390,000	
		84A	7,200,000	720,000	6,480,000	
		84B	7,200,000	720,000	6,480,000	
		122	10,000,000	1,000,000	9,000,000	
욕실 (부부, 공용)	수입산 포세린벽타일(600x600) 수입산 포세린바닥타일(300x600) 무광 니켈 마감 고급 수전 지정 알루미늄프레임, 브론즈 유리 샤워부스 디자인 강화형 세면기	76	4,950,000	495,000	4,455,000	
		84A	5,000,000	500,000	4,500,000	
		84B	5,000,000	500,000	4,500,000	

	욕실장 하부 동작감지 센서 등	122	7,250,000	725,000	6,525,000	
--	------------------	-----	-----------	---------	-----------	--

3) 가구 옵션(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옵션형(유상)	타입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중 문	지정 알루미늄 프레임 안전유리 3연동 슬라이딩 84A타입(양문형 여닫이 도어)	76	1,700,000	170,000	1,530,000	
		84A	1,800,000	180,000	1,620,000	
		84B	1,700,000	170,000	1,530,000	
		122	1,700,000	170,000	1,530,000	
펜트리 시스템가구 (현관, 거실)	시스템가구 선반	76	1,600,000	160,000	1,440,000	
		84A	1,650,000	165,000	1,485,000	
		84B	1,650,000	165,000	1,485,000	
		122	2,650,000	265,000	2,385,000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고급 LPM판넬 고급 시스템 선반 파우더장 서랍형금고 부부욕실 히든도어	76	5,200,000	520,000	4,680,000	
		84A	4,100,000	410,000	3,690,000	
		84B	4,100,000	410,000	3,690,000	
		122	6,700,000	670,000	6,030,000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지정 알루미늄 프레임 안전유리 슬라이딩	76	920,000	92,000	828,000	
		84A	920,000	92,000	828,000	
		84B	920,000	92,000	828,000	
		122	920,000	92,000	828,000	
침실1 불박이장	불박이장 설치 (1,500x620x2,300)	76	1,420,000	142,000	1,278,000	
		84A	1,420,000	142,000	1,278,000	
		84B	1,420,000	142,000	1,278,000	
		122	1,420,000	142,000	1,278,000	
발코니 보조주방	재활용하부장	122	2,400,000	240,000	2,160,000	

(122타입)	손빨래수전 및 싱크 MMA 상판 1구 하이라이트					
---------	----------------------------------	--	--	--	--	--

4) 조명 옵션(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옵션형(유상)	타입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조명디자인패키지 (거실, 주방, 복도)	거실/주방 라인매입등 픽처레일형 월위서 직부등 (디밍+색온도 조절가능) 대형 우물천장, 식탁 레일등	76	3,750,000	375,000	3,375,000	
		84A	3,750,000	375,000	3,375,000	
		84B	3,750,000	375,000	3,375,000	
		122	5,300,000	530,000	4,770,000	

5) 가전 옵션(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옵션형(유상)	타입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시스템 에어컨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76	6,900,000	690,000	6,210,000	LG 시스템에어컨
		84A	7,200,000	720,000	6,480,000	
		84B	7,200,000	720,000	6,48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22	9,900,000	990,000	8,910,000	
제습기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76	900,000	90,000	810,000	HIMPEL
		84A	900,000	90,000	810,000	
		84B	900,000	90,000	810,000	
		122	900,000	90,000	810,000	
고급 세대환기 시스템	SANGSHIN CO2+미세먼지센서 감지형 리모컨	76	470,000	47,000	423,000	전열교환기 및 미세먼지 감지형 룸컨 (HRD-EP250IBN)
		84A	470,000	47,000	423,000	
		84B	470,000	47,000	423,000	
		122	480,000	48,000	432,000	
쿡탑	쿠쿠화이트 인덕션 3구	76	450,000	45,000	405,000	CIRS-E301FW
		84A	450,000	45,000	405,000	

	일렉트로룩스 인덕션 3구	84B	450,000	45,000	405,000	LIV63344
		122	450,000	45,000	405,000	
		76	1,050,000	105,000	945,000	
		84A	1,050,000	105,000	945,000	
		84B	1,050,000	105,000	945,000	
		122	1,050,000	105,000	945,000	
오븐레인지	LG 복합 오븐레인지	76	450,000	45,000	405,000	LG전자 (MZ385EBTA)
		84A	450,000	45,000	405,000	
		84B	450,000	45,000	405,000	
		122	450,000	45,000	405,000	
식기세척기	LG 식기세척기 (12인용 가구패널부착형)	76	1,050,000	105,000	945,000	LG전자 (DIB22S)
		84A	1,050,000	105,000	945,000	
		84B	1,050,000	105,000	945,000	
		122	1,050,000	105,000	945,000	
와인셀러	LG 불박이 와인셀러 (아일랜드 설치)	122	1,050,000	105,000	945,000	LG전자 (R-WZ46JKX)
욕실 복합형 환풍기	복합형 환풍기 (건조+드라이+온풍)	76	740,000	74,000	666,000	HIMPEL
		84A	740,000	74,000	666,000	
		84B	740,000	74,000	666,000	
		122	740,000	74,000	666,000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고급 일출식 수납장 122형)	76	4,500,000	450,000	4,050,000	냉장(RR39A7695AP) 냉동(RZ32A7665AP) 김치(RQ32A7645AP)
		84A	4,500,000	450,000	4,050,000	
		84B	4,500,000	450,000	4,050,000	
		122	4,900,000	490,000	4,410,000	
	LG 오브제 (고급 일출식 수납장 122형)	76	4,500,000	450,000	4,050,000	냉장(BC1L1AA1) 냉동(BC1F1AA1) 김치(BC1K1AA1)
		84A	4,500,000	450,000	4,050,000	

	84B	4,500,000	450,000	4,050,000
	122	4,900,000	490,000	4,410,000

■ 유상 옵션 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 계약 및 납부일정 : 추후 고지

1)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3-635696	진흥기업(주)

※ 계약체결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추후 통지예정)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유상 옵션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해당 실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

- 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옵션품목 공사의 이행 착수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 진흥기업(주)에서 공급 및 시공하는 것으로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시행위탁자 ㈜나무산업개발과 관계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옵션품목계약은 본 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옵션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건본주택 및 사이버 건본주택은 유상옵션을 함께 전시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와 관련된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 차이에 의한 건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기타 선택을 우선 선택하여야 선택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당사가 지정한 옵션 계약 이후에는 추가, 변경, 취소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추가선택옵션품목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VI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협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소로 2-32호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기관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성 후 해당 관리청에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암반 발견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500세대 미만인 건축물로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대한 등급표시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선정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

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추후 인허가 조건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 바람.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공동주택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시공상의 하자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사업주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재래시장,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의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의 사유(담보대출불가 등)로 사업주체에 빠른 이행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개별 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수분양자가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수입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주차장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등급) VII-0.141g임.
- 본 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회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세대 기준으로 84B 및 122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벽, 장식패널 마감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84B, 122타입) 외 건본주택 미건립 주택형(76, 84A)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크기, 위치 등은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 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난방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세대 현관문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세대 내부 벽체에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공사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 옵션 선택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p>분양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있음. • [주택법]제54조제8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공급안내문(카탈로그)에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내용을 포함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관할구청은 제출받은 공급안내문(카탈로그)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함.
<p>설계 및 단지내·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사업계획 승인 조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은 시공회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과 연계된 단지 내 동선(도로, 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폭, 길이,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중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외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및 난간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광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을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외관 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주택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주택의 주차장은 지하1,2층 720대(근린생활시설 18대 주차 포함)로 계획됨.
- 본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북측 102동 및 103동 사이 주출입구, 서측 108동 전면부 인근 부출입구 각 1개소씩 계획 함.
- 본 단지의 주택 입주자를 위한 주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북측 106동, 107동 인근 주출입구 1개소 및 108동 부출입구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 단지내 주차장, E/V Hall, 계단실 등 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펌프실, 중수도 유량조정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8동 지하1층에 전기실, 물탱크실(101동 지하2층 물탱크실, 106, 110동 지하2층에 펌프실, 물탱크실)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112동 인근에 지하저류조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경로당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계약전에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105동 인근 지하주차장 외부에 가스공급을 위한 LPG가스 저장탱크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제주공항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북측 주진입로를 따라서 110, 114, 117동 하부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관리사무소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바닥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주차장과 주택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지하2층 주차장에 설치(급속 10대, 완속 15대,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108개소 총 133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단지배치 상 단위세대의 동·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부대시설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명은 계약(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시 단지내 조명,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중계기, 태양광설비. 옥상녹화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중앙광장,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오픈 스페이스 내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생활자원보관소 7개소(101동 배면, 103동 배면, 104동과 108동 전면부 사이, 111동 전면, 113동 필로티 옆, 116동 배면)가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 할 수 있음.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된 인근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기반시설(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협의를 통해 지정된 것으로 입주자의 민원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함
- 단지 내 설치 된 수공간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육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D/A(설비환기구),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CE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설계조건,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석축 등의 구조물 범위와 마감재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건물주택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특성, 단지내 차량통선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의 운반은 승강기를 통해 하여야 함.
-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음.
- 승강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입주민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됨.
- **본 주택은 사업승인 조건에 의해 중수도시설이 적용됨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에 중수를 이용한 양변기(절수 1등급, 4L)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저층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부 비상차로 위치는 소방준공 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계단 및 인도를 이용하여야 함
- 주민운동시설,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도로와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 및 석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의 속도는 90m/min((승강기 최고속도기준)의 속도로 차등 적용되며, 디자인은 시공사 표준안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106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설비(지하1층)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은 1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위치 및 개수는 실시설계시 주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며,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택배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수공간(바닥분수) 등의 조경시설물 및 주민공용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옥상조경 등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단지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고 단지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구간 중 등의 일부 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시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경우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저층 및 일부 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일부 계획되어 있으며, 옥상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수공간은 유아를 위한 시설이 아니며 입주 후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운영하여야함.
단위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미건립세대 76, 84A 세대는 건립 84B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오피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거실 기준)이며,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개별난방 현장이며, 각 세대별 주방발코니 내 가스보일러가 설치됨. • 본 주택은 사업승인 조건에 의해 중수도시설이 적용됨에 따라 세대 내 중수를 이용한 양변기(절수 1등급, 4L)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이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내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차단성능등급으로 추후 실제세대의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음. • 당 현장은 2022.05.30 주택건설 사업승인 접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85호에 따른 표준바닥구조 I로 설계되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깊이 900에 폭 1790(76), 1830(84A,84B), 1930(122)를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함.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다용도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세대 내 출입문은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체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에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

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픽스, 유리난간, 난간, 방충망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하향식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이 없어야 함.
- 보일러가 설치되는 주방발코니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은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LPG 공급회사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 발코니, 욕실내 샤워실, 욕조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공사 시 설비배관의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세라믹타일,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포함), LPM판넬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웰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포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음.
- 바닥타일음선(벽, 바닥) 타일 시공시 일부 요철 및 타일 나누기 줄눈간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함.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포함)포함, 아트월, LPM판넬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가변형 벽체 선택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 설치 장소는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환기유니트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작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 내 양변기 후면부에는 중수도(양변기 세정용) 및 상수도(비데용)를 위한 앵글밸브가 각각 설치됨.**
- 우수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배수구 및 선출통이 설치되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절기 퇴수 등 관리가 필요함.(미퇴수로 인한 동파 피해는 입주자 관리 책임)
- 가스배관은 배란다 일부 노출 시공 될 수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과 추가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승강기 및 기계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복도팬트리 벽체이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됨.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에어컨 실외기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만 적용.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건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음.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임.
- 단지내 태양광발전설비는 177.5kW가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각동 지붕에 설치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천장에 세대 환기유니트가 설치됨.
- 주방 발코니에 가스보일러 연도설치로 인한 천장 단차가 생길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탁구장, 공용화장실 등으로 구성됨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부대복리시설의 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며 집기류는 별도 제공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Ⅷ.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2인 이상 사용)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표시)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h3 style="margin: 0;">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하귀1리 21-2일원 주택건설사업 건축주 :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 준공(예정)일 : 2024년 10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외 27필지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면적 : 83,893.05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td> <td> 인증번호 : G-SEED-P-2022-0831-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2. 07. 26.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td> </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margin-top: 5px;">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2022년 7월 26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하귀1리 21-2일원 주택건설사업 건축주 :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 준공(예정)일 : 2024년 10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외 27필지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면적 : 83,893.05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인증번호 : G-SEED-P-2022-0831-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2. 07. 26.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h3 style="margin: 0;">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5px 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하귀1리 21-2일원 주택건설사업 준공연도 : 2024100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외 27필지 층 수 : 지하2층 / 지상8층 면적 : 83893.05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td> <td> 인증번호 : 22-주-에-1+-0189 평가자 : 김태환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h4 style="margin: 0;">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h4>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요구량</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h>배출량</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1.8</td> <td>에너지효율높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CO₂ 배출 적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8</td> </tr> <tr> <td>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td> <td></td> <td>에너지효율낮음</td> <td></td> <td>CO₂ 배출 많음</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margin-top: 10px;"> <h4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h4>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24.7</td> <td>49.5</td> <td>38.4</td> <td>10.3</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4.1</td> <td>25.3</td> <td>6.9</td> </tr> <tr> <td>조명</td> <td>16.4</td> <td>14.4</td> <td>39.5</td> <td>6.7</td> </tr> <tr> <td>환기</td> <td></td> <td>4.1</td> <td>11.2</td> <td>1.9</td> </tr> <tr> <td>합계</td> <td>71.8</td> <td>102.1</td> <td>114.4</td> <td>25.8</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2022년 07월 15일</p> </div>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하귀1리 21-2일원 주택건설사업 준공연도 : 2024100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외 27필지 층 수 : 지하2층 / 지상8층 면적 : 83893.05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인증번호 : 22-주-에-1+-0189 평가자 : 김태환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71.8	에너지효율높음	1+	CO ₂ 배출 적음	25.8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에너지효율낮음		CO ₂ 배출 많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4.7	49.5	38.4	10.3	급탕	30.7	34.1	25.3	6.9	조명	16.4	14.4	39.5	6.7	환기		4.1	11.2	1.9	합계	71.8	102.1	114.4	25.8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하귀1리 21-2일원 주택건설사업 건축주 :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 준공(예정)일 : 2024년 10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외 27필지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면적 : 83,893.05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인증번호 : G-SEED-P-2022-0831-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2. 07. 26.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하귀1리 21-2일원 주택건설사업 준공연도 : 2024100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외 27필지 층 수 : 지하2층 / 지상8층 면적 : 83893.051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인증번호 : 22-주-에-1+-0189 평가자 : 김태환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71.8	에너지효율높음	1+	CO ₂ 배출 적음	25.8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에너지효율낮음		CO ₂ 배출 많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4.7	49.5	38.4	10.3																																																										
급탕	30.7	34.1	25.3	6.9																																																										
조명	16.4	14.4	39.5	6.7																																																										
환기		4.1	11.2	1.9																																																										
합계	71.8	102.1	114.4	25.8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410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의 지하층 층고 : 지하1층 3,500mm / 지하2층 4,600mm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차로 통로의 유효 높이 지하1층 2,700mm 이상 / 지하2층 2,700mm 이상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유)광진이앤지	풍낭ENG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021,816,000	302,101,800	45,000,000	60,150,8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3-101-0003200 호	267,739,99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p>○ 보증약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p> <p>공사는「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p>
<p>○ 보증약관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p> <p>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p>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p>

2.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 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 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 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 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 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 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 배상금
 - 11.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 상금
 - 13.«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흡선부위, 그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그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 이전에 주택분양 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보증 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 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약관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행정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 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위탁자 (주)나무산업개발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시공사 (주)진흥기업 간 체결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공급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나무산업개발이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나무산업개발이고, 신한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자(수분양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공급계약자(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나무산업개발과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경로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나무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나무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수 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신탁해지 시에는 사업주체가 (주)나무산업개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은 (주)나무산업개발 에게 이전됩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으로서의 일체 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 수탁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고유 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책임준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입주지정일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자동연장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나무산업개발	신한자산신탁(주)	진흥기업(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134, 7층 (노형동, 지큐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인천광역시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법인등록번호	220111-0209817	110111-3543801	110111-0006349

※ 시행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61

■ 건본주택 안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건본주택



■ **위치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159-2번지

■ **운영기간** : 2023.06.23(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일정에 따라 건본주택의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건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기간 후 상황에 따라 지정계약전일까지 건본주택 휴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8: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건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159-2번지 [신광사거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홈페이지 (PC, 모바일)

■ **주소** www.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com

분양문의

■ 1811-5678 (10:00 ~ 18:00)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